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터미널 이용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터미널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다. 터미널 사업범위(안 제3조)
- 라. 터미널 관리·운영(안 제4조)
- 마.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사항(안 제5조~제6조)
- 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안 제7조)
- 사. 취소사항 및 준용 법령, 조례 등(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4. 7. 16. ~ 2024. 8. 5.) 결과, 의견제출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025호, 안전교통과-6710(2024. 7. 15.)호
- 2) 규제심사 : 비규제사무 [기획예산과-978(2024. 7. 15.)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978(2024. 7. 15.)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반영 [가족복지과-9239(2024. 7. 1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351(2024. 8.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797(2024. 8. 14.)호]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하리 57-1번지, 하리 58-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기타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의무) ①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과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터미널 관리 및 운영 등 비용 필요
-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터미널의 관리·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터미널 매입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은 자체
재원 (군비)으로 지출
- 터미널 운영에 따른 매표 수수료와 상가 사용료 징수로 수입금 발생
(※세외수입 처리)

나. 추계 결과

○ 세입(연간기준)

(단위:천원)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계	매표,사용료		28,871	
터미널 매표	매표수수료 (수수료율 10.5%)	23,830명 x 1,100원	26,213	
토지사용료	가설건축물 2동 (기사 대기실)	53,160천원 x 50/1,000	2,658	

○ 세출(연간기준)

(단위:천원)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합계	매표,사용료		122,779	
인건비	매표 2명, 관리 1명	-2,350천원 x 3명 x 12개월	84,600	기본급, 수당,보 험부담금
지출경비	운영비	-1,810천원 x 1식 x 12개월	21,720	통신,수 도,소모 품,수선 등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일반관리비(순원가 x 5%) -이윤(10%),부가세(10%)	16,459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 재원 및 터미널 매표, 사용료 수입금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01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4,811	28,871	28,871	28,871	28,871	120,295
운영수입 (매표,사용료)	4,811	28,871	28,871	28,871	28,871	120,295
세 출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관리비 (인건비,운영비)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재원 조달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515,927
의 존 재 원 자 체 수 입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24,811	122,779	122,779	122,779	122,779
지방세						
세외수입	4,811	28,871	28,871	28,871	28,871	120,295
군비	20,000	93,908	93,908	93,908	93,908	395,632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 자 등)						